

부천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사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7. 9. 19.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 9. 19.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5회 부천시의회(입사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97. 9. 26.)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김종연)

가. 제안이유

-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 및 확충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결정하고
- 본 분뇨처리시설을 변경결정(폐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심지의 부족한 대형주차장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3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재 가동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인근(약 500m)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 및 확충하고 본 분뇨처리시설은 폐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함으로써
- 도심지의 부족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트럭, 버스) 등의 유료주차장 제공으로 불법주차 근절 및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주차장 설치 규모와 사업예정 기간은?	○ 소형차 71대, 대형차 1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며 98. 3.~2000. 12.까지 총 9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임.
○ 동 시설을 주차장으로 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 관내에는 대형주차장이 없어 대형차의 주차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으며 이로 인해서 대형주차장의 필요로 되었음.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찬성의견서 채택(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첨부서류

○ 의견서 1부

의 건 서

의안번호	316	안전명	부천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제출자	부천시장	의 결 연월일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97. 9. 26.)

부천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 일원의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의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운영하고 기존 분뇨처리시설에는 도심지의 부족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 등의 유료 주차장 제공으로 불법주차 근절과 주차난 해소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97년 9월 26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부천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316호
의결년월일	97. 9. 30. (제55회)

□ 제안사유

-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 및 확충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결정하고
- 본 분뇨처리시설을 변경결정(폐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심지의 부족한 대형주차장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3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 현재 가동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인근(약 500m)에 소재한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 및 확충하고 본 분뇨처리시설은 폐지하여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함으로써
- 도심지에 부족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여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트럭, 버스) 등의 유료주차장 제공으로 주차근절 및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 관련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3호

부천시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

□ 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 변경결정 조사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폐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처리 시 설	오정구 대장동 688-1번지 일원	21,477	감)21,477 (6,496평)	— 폐 지	

□ 결정사유

-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분뇨처리시설 이전 계획에 의하여 토지이용을 재고하고자 많은 면적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시외곽 지역임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분뇨처리시설을 폐지 하고,
- 동 시설위치를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여 도심지의 혼잡한 대형차 주차를 시외곽으로 유도함으로써, 이면도로에 대한 차량통행 원활 및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주요시설 규모

1차 처리설비(진처리)			2차 처리설비			비고
품 명	용량	수량	품 명	규격	수량	
제 사 스크린	200kℓ/일	1대	브 로 와		15대	
로타리스크린	"	2대	액상부식조	400m ³	6지	
드럼스크린	"	4대	탈 수 기	1.3Ton/h	2대	
탈 취 설 비		1식	고속건조기	350kg/h	1대	
소 각 기	1m ³ /일	1식	샌 드 필터	300kℓ/일	1대	

- 처리용량 : 250m³/일

□ 참고사항

○ 대형주차장 검토

- 단계별 사업시행(소형차 71대, 대형차 103대/21,191m²)
 - 1단계 : 녹지고안 및 미가동 시설물(3개동)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1차 주차장 설치 —— 대형차 20대/4,235m²
 - 2차 주차장 설치 —— 대형차 23대/4,040m²
 - 2단계 : 1차 분뇨처리 시설물 및 이전 후 전체면적에 주차장 설치
 - 1단계 주차장 설치지역 외 —— 소형차 71대, 대형차 60대/12,916m²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 98. 3.~2000. 12.
- 사업비(시설비) : 950백만원

○ 위치도

위 치 도

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천

S=1:3,000

삼 정

24